

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0. 13

나. 제출자 : 이재영 의원 외 1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3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10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재영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건축심의위원 중 타지역 거주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함으로써 부천지역 실정에 맞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위원을 선정토록 개정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건축조례 제5조(구성) 제4항 신설 “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.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93호
의결년월일	2000. 10. 20 (제81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13

제 출 자 : 이재영 의원 외 17인

□ 제안이유

- 건축심의위원 중 타지역 거주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함으로써 부천시역 실정에 맞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위원을 선정토록 개정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건축조례 제5조(구성) 제4항 신설 "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."

조례 제 호

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.

-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구성) ①~③(생략) (신설)	제5조(구성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자로 한다.
④~⑤(생략)	⑤~⑥(현행과 같음)